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1140-100001-10



2025년 연구보고서

행정자료의 활용 제고를 위한 행정서식 개선 방향 검토

2026. 3.



<https://mods.go.kr/dsri>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보고서 2025-21

행정자료의 활용 제고를 위한 행정서식 개선 방향 검토

남상민 · 박주연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Data and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발간사

“데이터의 가치는 분석과 활용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혁신과 효율성 향상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한 숫자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나침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AI 기반의 공공 AX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연구에 지속적으로 매진해 왔습니다.

2025년 연구보고서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첨단 기술을 국가통계에 접목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연구 성과를 담았습니다.

첫째, 인공지능(AI) 기반 국가통계 기술혁신을 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현장조사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조사자료의 내용검토 및 자동분류, 질의응답에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이는 통계 생산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생성형 AI를 활용한 나우캐스트 지표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는 통계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점차 열악해지고 있는 조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통계방법론 연구와 국가통계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를 강화하였습니다.

확률표본과 자원자표본을 통합한 추정 방안 연구는 응답자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비확률표본의 병행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데이터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료수집 개선 연구와 데이터 통합방법 연구는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통합 방법을 보다 체계화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에 집중하였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고립·은둔 청년’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문항 개발 연구를 비롯하여, 돌봄 분야 국가통계 활용 방안과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통계·지표 분석 연구는 데이터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득이동통계 심층 분석 연구와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중·고령기 비교 연구는 관련 정책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표 작성 연구와 퇴직연금 적립금 배분 방법 연구는 국민의 체감 경기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인 경제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새롭게 출발한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앞으로도 최신 기술과 사람을 잇는 데이터 연구를 통해 국가통계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통계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각계각층의 의사결정자에게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3월

국가데이터연구원장

가진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선행 연구 및 사례	3
제1절 행정서식 개선을 통한 통계 활용 제고 연구	3
제2절 민원서식 개선 추진 사례	15
제3장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20
제1절 행정자료 입수 및 DB구축 관련 제도	20
제2절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	26
제3절 제도적 기반에 따른 행정서식 활용현황	30
제4장 요약 및 개선 방향	33
제1절 요약	33
제2절 개선 방향	35
참고문헌	37
Abstract	38

요 약

이 연구는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행정자료의 정보 수집 도구인 행정서식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행정서식은 행정자료 및 국가통계 생산의 기초단위이며, 하나의 서식이 다수의 통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서식의 구조와 품질은 통계의 정확성과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행정서식은 개별 소관부처의 법령 및 행정체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통계적 활용 관점에서 체계적인 개선은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 결과,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서식 개선 사례와 같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와 조정 구조가 마련된 경우에는 서식 개선이 실제 개정으로 이어진 반면, 통계적 필요성만을 근거로 한 경우에는 소관부처 협의 단계에서 추진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행정서식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계와 행정 목적을 결합하고, 조정 기능을 수행할 협의 구조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국가데이터처는 데이터융복합관리포털을 통해 행정자료 수요 발굴부터 활용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서식은 자료 입수와 활용 판단의 중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노후화된 행정서식을 선별하여 우선 개선 대상으로 도출하고, 행정자료의 활용 과정에서 제기된 수요부서의 서식 개선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것을 제안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실무 중심의 서식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범부처 협의체로 확대하여 행정서식 개선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행정서식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자료 품질 및 국가통계 신뢰성 제고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용어 : 행정자료, 행정서식

제 1 장

서 론

기존 조사 중심의 통계생산 방식은 응답자 부담, 비용 증가, 비표본 오차 문제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생산의 필요성이 확대되었다. 즉, 행정기관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하는 행정자료의 활용이 중요해짐에 따라 2007년 4월 통계법에 행정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2009년 2월에는 국세기본법, 2014년 1월 지방세기본법, 2017년 12월 관세법의 개정을 통해 과세자료의 요구 규정을 마련하여 통계생산 시 행정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조사 비용 절감과 응답자 부담 경감, 통계생산 효율화 등 행정자료의 활용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

이에 국가데이터처에서 2024년 기준 입수·관리하고 있는 행정자료는 주자료 기준 319종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과세자료, 사회보험·연금 자료, 농림어업자료로서 경제·사회 분야 등의 다양한 행정서식을 기반으로 수집되고 있다.

행정자료를 통계 생산에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료의 기초적인 형태인 ‘행정서식’이다. 행정서식은 자료 수집의 도구이자 구조적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서식의 구성과 항목 체계는 이후 생성되는 데이터의 내용과 범위, 연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행정서식은 개별 기관의 행정 목적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 관점에서의 적정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16년 행정안전부의 ‘민원서식 개선위원회’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등의 행정서식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국가데이터처도 이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행정서식의 표준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기관 및 법령별로 동일 항목의 개념이 다르거나, 분류 방식이 일치하지 않거나, 시기별로 서식이 자주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통계 DB구축과 시계열 분석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자료 정제 및 연계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앞으로 행정자료 기반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서식의 구조와 항목 체계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반하여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서식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선행 연구 및 서식 개선

사례를 검토하고, 3장에서는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을 위한 행정자료 입수 및 DB구축 관련 제도와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행정서식 및 통계 활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요약 및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 2 장

선행 연구 및 사례

제1절 행정서식 개선을 통한 통계 활용 제고 연구

1.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서식의 통계 활용 제고 방안 연구

박주연과 이희길(2013b)은 비영리(기부, 나눔 등) 분야 통계생산을 위해 공익법인이 법령에 따라 결산서류 등의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정보공시 서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서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제도는 공익법인이 매년 주기적으로 재정과 사업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제도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이 제도는 공익법인의 정보공개로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가 기부단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공익법인이 정보를 공시하는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 서식’으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등 7종의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¹⁾

이 연구는 비영리 분야의 정보 축적과 통계생산에 필요한 공시 항목을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서식에 신설하고 기존 항목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의 통계개발원(현 국가데이터연구원)²⁾에서 수행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정보공시 제도의 운영기관인 국세청에 제공되었고, 이후

1) 소규모 공익법인은 동 시행규칙의 [별지 제31호의2 서식]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소규모 공익법인의 기준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 대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 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이다.

2) 통계청은 2025년 10월 1일에 국가데이터처로, 통계개발원은 2025년 2월 25일에 국가통계연구원으로 2025년 12월 30일에 ‘국가통계연구원’에서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기관명 변경 전에 수행한 연구나 활동은 수행 당시의 기관명을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제도와 서식을 규정한 법령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서식을 개정하였다. 지금부터는 연구에서 시작해서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서식 개정을 추진한 과정과 개정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가.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서식 개정 추진 과정

박주언과 이희길(2013b)이 비영리 분야 통계생산을 위해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제도의 서식 개선에 주목하게 된 것은 2011년에 기부와 자원봉사를 의미하는 나눔에 관한 통계의 개선 방안을 연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2011년 연구에서 개인이나 기업 같은 나눔의 참여자뿐만 아니라 민간의 기부금과 정부의 보조금 등의 자원을 조성하고 직·간접적으로 배분하는 등 나눔의 핵심적인 매개 기능을 담당하는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의 통계를 생산할 필요성이 인식되었다(박주언과 이희길, 2012).

후속 연구로 2012년에는 비영리단체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정, 사업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규정에 착안해서 비영리단체의 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박주언과 이희길, 2013a). 이를 통해 비영리단체 중 공익성이 높은 공익법인의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포괄범위가 넓고 체계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추진하여 통계 작성에 활용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이 제도를 비영리 분야 통계생산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자료를 수집하는 도구에 해당하는 정보공시 서식을 보다 유용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2012년에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에 참여하였다. 이 협의회는 나눔 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정책을 협의·조정하여 나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눔 정책에 관련된 정부의 다양한 부처에서 참여하여 운영되었다.³⁾ ‘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에 2011년에 수행한 나눔 통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안건에는 비영리단체의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통계생산 필요성도 포함되었다. 협의회에서는 나눔 확산을 위해 나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측면에서 나눔 통계의 생산 기반 강화에 관심을 두고 논의하였다. 비영리단체의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통계생산 방안은 충실한 정보공개를 전제로 하므로 나눔 단체의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도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안건 상정 이후에는 2012년에 수행하는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협의회 논의의 결과를 거쳐 공익법인의 정보공시제도의 운영기관인 국세청에 공시 서식을 상세화하는 개선안을 1차로 제정하였다.

2013년에는 이전 연구를 기반으로 공익법인을 통한 비영리 분야 통계생산을 위해

3) 나눔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총리 훈령 제정을 통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다(2011.11.4,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실, 2012).

정보공시 서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구상한 서식 개선안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 후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토론회를 실시하여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서식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식 상세화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개선안을 도출하고, ‘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의 조율을 거쳐 공익법인의 정보공시제도의 운영기관인 국세청에 제공하였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서식 개선을 추진하였고, 2014년 3월에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제도와 서식을 규정 한 법령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서식을 개정하였다.

여기서 살펴본 사례는 통계청의 통계개발원에서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서식 개선을 통한 통계적 활용성 제고를 위해 수행한 3년간의 단계적인 연구로 개선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여 논의함으로써 개선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는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서식의 소관 부처인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의해 개정이 이루어졌다.

나.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서식 개정 사항

공익법인이 정보를 공시하는 서식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통계청의 통계개발원에서 2011년~2013년 연구를 통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서식⁴⁾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 대상과(<그림 2-1> 2012년 2월 개정 서식),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2014년 3월에 개정한 서식을 비교하였다(<그림 2-2>). 2014년 후 몇 차례 더 개정되었으나 2014년에 가장 큰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때의 변화 기초를 유지하면서 보완해 나가고 있으므로 가장 최근에 개정된 서식이 아니라 연구 전후 서식 변경을 살펴보았다.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서식은 기부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나눔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보다 폭넓게 제공된 정보를 통계생산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항목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상세화되었다. 2014년에 개정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서식은 첫째, ‘1. 기본사항’ 부문에 공익법인에 관한 기본정보(설립 연월일, 홈페이지 주소), 분류(주무관청, 기부금(단체) 유형, 설립 주체, 단체 유형), 인력(이사 수, 고용 직원 수, 자원봉사자 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되었다.

둘째, ‘3.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은 ‘3. 수입 원천별 수입금액 현황’에서 부문명이 변경되었고,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기부금, 보조금, 기타 사업수입)과 필요경비(사업비, 사업관리비)에 대한 하위 분류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표가 재구성되었다. 그리고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필요경비의 더욱 세부적인 현황은 이후 ‘6. 고유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적사업 수입금액 세부 현황’, ‘7. 수익사업 수입금액(필요경비) 세부 현황’, ‘8.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 현황’에 기재하도록 하였다.⁵⁾ 이때 고유목적사업에 관한 ‘6.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 현황’, ‘8.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 현황’ 부문은 새로 추가되었다. 수익사업에 관한 ‘7. 수익사업 수입금액(필요경비) 세부 현황’은 이전의 ‘3. 수입 원천별 수입금액 현황’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 것이다.

셋째, ‘4. 세무 확인과 회계감사’ 부문이 신설되었다. 복식부기, 세무 확인, 회계감사 여부를 표시한다.

넷째, ‘5. 고유목적사업 세부 현황’ 부문은 이전에 개방형으로 기재하는 ‘고유목적사업 현황’ 항목은 유지하고, 사업의 내용, 대상, 지역을 폐쇄형으로 보고하는 항목은 추가되었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은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을 선택하도록 한다.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서식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에서도 2014년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⁶⁾는 기부금 지출 명세서를 국내 사업과 국외 사업으로 분리하였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서식⁷⁾은 신설되었다.

다.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자료 통계 활용

현재 국가데이터처에서는 공익법인이 재정과 사업 현황 등에 대해 공시하는 자료를 입수해서 경제총조사와 서비스업 조사의 통계 작성에 활용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자료 중 사업연도, 공익 법인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공익사업 유형, 단체 유형, 고용 직원 수, 자원봉사자 수에 관한 항목이 경제총조사와 서비스업 조사의 항목 대체와 검증/보완에 이용되고 있다. 이 중 단체 유형, 고용 직원 수, 자원봉사자 수는 2014년에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서식의 대규모 개정으로 추가된 항목이다.

5) <그림 2-2>에는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세부 현황을 파악하는 6~8. 부문은 제시하지 않았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에 해당한다. 다만 2023년 3월에 개정된 가장 최신 서식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로 제시되어 있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2.2.28>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앞 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사항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사업연도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⑧ 공익사업유형	⑨ 설립근거법

(단위 : 원)

2. 자산보유현황

구분	⑩ 총자산가액	⑪ 토지	⑫ 건물	⑬ 주식 등	⑭ 금융자산	⑮ 기타 자산
⑯ 총계 (⑩=⑪+⑫)						
⑰ 고유목적사업						
⑱ 수익사업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 현황 (단위 : 원)

구분	⑯ 합계	수익사업						⑳ 기타 수익사업	㉑ 고유 목적 사업
		금 용				부 동 산			
		㉒ 소계	㉓ 이자	㉔ 배당	㉕ 기타	㉖ 소계	㉗ 임대		
수입금액									
필요경비		/	/						
소득금액									

4. 고유목적사업 현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계출서류	1.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대차대표표,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2.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명세서 4. 주식등의 출현·취득·보유·처분 명세서 5.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박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그림 2-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정보 공시(<개정 2012. 2. 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4.3.14>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계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정기공시 [] 해산공시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설립연월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팩스	/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자우편주소	
⑨ 공익사업유형		⑩ 설립근거법	
⑪ 주무관청		⑫ 기부금(단체) 유형	[] 법정 [] 지정 [] 기타
⑬ 설립주체	[] 개인+가족 [] 기업 [] 기업+개인 [] 종교단체 [] 지역사회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기타		
⑭ 단체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인가단체 [] 공공기관 [] 기타		
⑮ 이사 수	명	⑯ 고용직원 수	명
		⑰ 자원봉사자 수	명

2. 자산보유현황 (단위: 원)

구분	⑱ 총자산가액	⑲ 토지	⑳ 건물	㉑ 주식 등	㉒ 금융자산	㉓ 기타 자산
① 총계 (⑱=⑲+㉑)						
② 고유목적사업						
③ 수익사업						

3.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 (단위: 원)

구분	㉔ 소득금액	㉕ 수입금액				㉖ 필요경비		
		㉗ 소계	㉘ 기부금	㉙ 보조금	㉚ 기타 사업수입	㉛ 소계	㉜ 사업비	㉝ 사업 관리비
① 총계 (⑱=⑲+㉑)								
② 고유목적사업								
③ 수익사업								

4.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㉞ 복식부기 여부	[]여 []부	㉟ 회계감사 여부	[]여 []부
㊱ 세무확인 여부	[]여 []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계출서류	1. 공익법인들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2.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명세서 4.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처분 명세서 5.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6.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들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등질지 80g/㎡]

<그림 2-2>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정보 공시(<개정 2014. 3. 14.>)

(계3역)

6.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

① 고유목적사업 현황

② 사업내용
 예술, 문화, 스포츠 학교 경영 및 교육연구 학자금, 장학금지원 병원경영, 의료, 보건
 사회복지 환경, 동식물보존, 유물 지역개발, 주거/자원봉사 법률, 정치 모금 및 배분
 국제개발, 해외원조 경제 산업, 고용 기타

③ 사업대상
 모두 해당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다문화) 가족, 여섯 일반대중 기타

④ 국내 주요 사업지역
 전국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세종 제주 해당 없음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전세계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해당 없음

⑥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재단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지역, 수혜인원, 사업내용, 사업비)을 적습니다.

1	사업명	사업비	원
사업 실적			
2	사업명	사업비	원
사업 실적			
3	사업명	사업비	원
사업 실적			
4	그 외 사업	개	사업비
합 계	총 목적사업	개	사업비 합계
			원

작성 방법

6.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① 고유목적사업 현황"란은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을 적습니다.
 나. []에는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다. ⑥란은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재단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지역, 수혜인원, 사업내용, 사업비)을 적습니다. 다만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비가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을 적습니다.
 라. ⑥란의 사업비 합계는 6쪽 "8.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의 "1. 당기 사업비"와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복사지 80g/㎡ 또는 동질지 80g/㎡]

<그림 2-2>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정보 공시(<개정 2014. 3. 14.>) 계속

2. 출생 통계 작성을 위한 출생증명서 활용 방안 연구

박은영과 민경아(2014)는 출생 통계 활용을 위한 측면에서 ‘출생증명서’의 효율성을 위해 현재 항목 중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항목을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출생증명서’는 출생 시 의사나 조산사 등이 발급하며 출생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그림 2-3>)⁸⁾에 해당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출생 통계의 작성과 서식 작성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증명서’ 서식에 항목 추가 및 재구성, 유사한 다른 서식과 작성 기준 통일 등의 4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출생증명서’ 소관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적용한 서식 개정으로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여기에서는, 행정서식 개선으로 서식에서 수집한 자료의 통계적 활용성 향상을 모색한 선행 연구로서, 이 연구에서 구상한 ‘출생증명서’의 4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가. ‘출생증명서’ 개선 방안

1) ‘출생증명서’ 항목 추가 및 재구성(<표 2-1>)

첫 번째 개선 방안으로 ‘출생증명서’에 분만 방법을 보고하는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분만 방법은 출생 통계 활용과 관련된 주요 지표로 어머니의 연령, 단태/다태 여부, 출산 시 위험 요인 등과 관련된 통계를 ‘출생증명서’의 해당 항목을 이용하여 작성함으로써 활용성 있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표 2-1> 출생 통계 활용 ‘출생증명서’ 개선 방안: 항목 추가 및 재구성

	현행	개선(안)	작성 가능 통계
신규 항목 추가	-	분만 방법	· 모의 연령별 분만 방법 · 지역별 분만 방법 · 단태/다태아별 분만방법 등
기존 항목 재구성	출생아의 신체 상황	출생 시 이상 상황	· 출생 중 긴급 치료를 요구하는 출생아 수 현황
	출생아의 건강 상황	출생 시 선천성 이상 상황 아프가 점수	· 출생 시 선천성 이상아 통계 · 아프가 점수 현황별 출생아 · 아프가 점수 현황별 체중

8) <그림 2-3>의 ‘출생증명서’는 최신 개정본(<개정 2024. 7. 18.>)으로 박은영과 민경아(2014)의 연구 시점 서식과 일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신장’ 항목 추가, 유의 사항 보완, 전반적인 디자인 변화 등이므로 최신 개정본을 제시하여도 연구 당시의 서식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18.>

출생증명서

출생아의 부모	부	성명		연령	만 세 (년 월 일생)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	직업	
	모	성명		연령	만 세 (년 월 일생)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	직업	
산모의 주소							
출생 장소							
① 자가 ② 병원 ③ 의원 ④ 모자보건센터 ⑤ 조산원 ⑥ 기타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24시간제에 따름)			출생아	성별	남 · 여 · 불상
일신기간		주				성명	
다태(多胎)	① 2태	다태아(多胎兒) 출산 중의 해당 출생아의 출산 순위			① 제1아 ② 제2아		
	② 3태				③ 제3아 ④ 제4아		
	③ 태	다태아 출산 중의 태아의 상태			출생 명(남 명, 여 명) 사산 태(남태, 여태, 불상)		
산모의 산아 수		명 중 생존자 명, 사망자 명, 사산자 태					
출생아의 신체 상황						몸무게	□.□□kg
						신 장	□□.□□cm
출생아의 건강 상황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명칭:							
면허번호	제	호	조산(의사, 한의사, 조산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제	호	조산(의사, 한의사, 조산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1.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주소지의 구청·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하며, 지연 신고 및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산모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산모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부의 성명·연령·직업 및 모의 연령·직업·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복합지 80g/㎡]

<그림 2-3> 출생증명서

또한 ‘출생증명서’의 ‘출생아의 신체 상황’과 ‘출생아의 건강 상황’ 항목을 출생할 때 이상 상황, 선천적 이상 상황 그리고 출생 시 건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아프가 점수를 작성하도록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출생 시 위험 상태의 출생아 통계 등을 작성하고 관련 항목과의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생증명서’의 ‘출생아의 신체 상황’과 ‘출생아의 건강 상황’ 항목을 통계 활용 측면에서 객관식 항목으로 재구성하고, 아프가 점수는 점수를 기재하기보다는 구간 단위 선택 항목으로 구성하면 작성의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무응답 다수 항목 삭제

두 번째는 ‘출생증명서’ 작성 시 무응답이 많이 발생하는 출생아 부모의 ‘직업’ 항목과 ‘연령’ 항목 중 만 나이를 기재하는 부분은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부모의 ‘직업’은 의료기관에서 산모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부모에게 물어봐야 하는 부담이 있다. 부모의 ‘연령’은 출생 연월일과 만 나이를 모두 적게 되어 있는데 실제 부모의 출생 연월일을 파악하면 만 나이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만 나이는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3) ‘출생신고서’ 동일 항목과 기준 통일

세 번째는 ‘출생증명서’와 별도의 ‘출생신고서’⁹⁾가 동일 항목인데 작성 기준이 다른 경우 통일할 것을 제안하였다. 출생아의 ‘몸무게’는 ‘출생증명서’는 kg 소수 이하 두 자리로, ‘출생신고서’(항목명: 신생아체중)는 kg 소수 이하 세 자리로 작성하는 차이가 있다. ‘출생신고서’의 kg 소수 이하 세 자리는 2,500g 미만 저체중 출생아(Low Birth Weight)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정되었다. 한편, 출생아의 몸무게에 관한 「모자보건법」 등의 다른 신고 서식에서는 g 단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출생증명서’도 g 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임신기간’은 ‘출생증명서’는 주수, ‘출생신고서’(항목명: 임신주수)는 주수와 일수를 작성하여 통일성이 없다. 이 연구에서는 ‘출생증명서’에서 ‘임신기간’을 ‘출생신고서’와 같이 주와 일을 구분하여 기입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산모의 산아 수’는 ‘출생신고서’와 같이 ‘모의 총출산아 수’로 표현하여 의료기관에서 작성 시 혼란을 줄일 것을 권고하였다.

박은영과 민경아(2014)의 연구 후 2017년 ‘출생신고서’의 개정으로 ‘몸무게’, ‘임신기간’, ‘산모의 산아 수’는 ‘출생증명서’에만 존재하므로 서식 간 동일 항목의 작성 기준 차이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해당 3개 항목은 2025년 ‘출생증명서’에서도 과거

9)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호]를 의미한다. ‘출생신고서’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연구 시점과 동일한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4) ‘출생신고서’와 통합

마지막으로 ‘출생증명서’는 앞에서 언급한 작성 기준이 다른 3개 항목 외에도 출생아, 부모 등에 관해 ‘출생신고서’와 중복되는 항목이 다수 존재하므로 유사한 두 서식을 하나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다.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가 통합되면 서식 간 공통 항목을 중복으로 작성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박은영과 민경아(2014)의 연구 후 2017년 ‘출생신고서’ 개정으로 출생아와 부모에 관한 대다수의 인구동향조사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서식 간 공통 항목은 축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는 별개로 유지되고, 서식 간 공통 항목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3. 임금근로자 분류 세분화를 위한 관련 행정서식 개선 연구

박성률과 변준석(2022)은 경제구조 통계를 작성할 때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2021년에 개정된 한국중사상지위분류를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한국중사상지위분류 중 임금근로자는 통계청에서 입수하는 행정자료를 통해서 중분류까지 세분화한 집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금근로자와 관련된 정보를 신고하는 행정서식을 개선하면 한국중사상지위분류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임금근로자의 중분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임금근로자 관련 서식에 고용계약 기간을 신고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 방안의 적용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고용계약에 관련된 기존 항목의 신고 대상자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하는 안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다만 앞서 살펴본 ‘출생증명서’에 관한 연구와 같이 이 연구에서 제시된 행정서식 개선 방안은 이후 행정서식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개정을 논의하는 단계로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행정서식 개선을 통해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 제고를 시도한 선행 연구로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서식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임금근로자 관련 서식 개선 방안

■ 1안) 고용계약 기간 관련 항목 신설

한국중사상지위분류에서 임금근로자를 중분류까지 세부적으로 나누는 기준은 고용

계약 기간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데이터에서 입수하고 있는 행정자료에는 임금근로자 전체의 고용계약 기간에 관한 정보가 없다. 따라서 임금근로자를 세분화하기 위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나 4대 보험 직장가입자 행정시식에 고용계약과 관련된 항목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항목 설계는 고용계약 기간을 직접 입력하거나 혹은 한국중사상지위분류 코드 체계(41~45)¹⁰⁾를 기준으로 신고자가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범주형 변수로 만들어서 구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 2안) 고용계약 관련 기존 항목 신고 대상 확대

행정서식은 통계 작성 목적이 아닌 행정서식별 목적과 특성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기존 서식을 변형하는 형태로 제안하였다.

<그림 2-4>는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 서식¹¹⁾으로 고용보험 항목을 보면 계약직 여부와 계약종료연월을 파악하고 있다. ‘계약직 여부’ 항목은 적어도 임금근로자 중분류 중 ‘4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42.~45.’로 구분이 가능하고, ‘계약종료연월’ 항목은 ‘42. 장기 고정 기간 근로자(1년 이상)’, ‘43. 단기 고정 기간 근로자(3개월~1년 미만)’, ‘44. 단기·임시 근로자(3개월 미만)’의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계약직 여부’와 ‘계약종료연월’ 항목은 고용보험에서만 파악하고 있는 정보로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는 근로자의 관련 정보는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항목을 행정서식의 공통 항목으로 작성하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신고하는 모든 근로자를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임금근로자에 관한 개정된 한국중사상지위분류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10) 개정된 한국중사상지위분류에서 임금근로자 중분류(41~45)는 ‘4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42. 장기 고정 기간 근로자(1년 이상), 43. 단기 고정 기간 근로자(3개월~1년 미만), 44. 단기·임시 근로자(3개월 미만), 45. 유급 견습, 훈련생 및 인턴’으로 구분된다.

11)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 취득 신고서’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 서식]에 해당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2. 31.>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5쪽 중 1쪽)
 * []에는 해당되는 곳에 "X"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員の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스톱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산재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우편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팩스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 국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체류자격 자국과	대표자 여부	월 스톱액 (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 (원)	자격 취득일 (YYYY. 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 취득 부호	특수 직종 부호	직역 부호	자격 취득 부호	보험료 부호	공무원·교직원 부호	직종명 /부호	직종 부호	1주 근로 시간	계약 종료 연월 (계약직만 작성)	보험료 부과구분 (해당자만 작성)
1		[]예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 월 날부 희망)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산재보험				
2		[]예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 월 날부 희망)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산재보험				
3		[]예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 월 날부 희망)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산재보험				
4		[]예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 월 날부 희망)			[]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산재보험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그림 2-4>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

제2절 민원서식 개선 추진 사례

지금부터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서식 설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민원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일을 의미하며, 민원서식은 민원을 신청하는 데 사용하는 문서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민원서식은 국민과 정부 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이지만, 서식이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작성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재 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서식을 작성할 때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서식 설계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는 등 서식 설계의 기준을 변경하려는 논의를 추진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서식 설계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여 서식을 개선하였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식 개선 노력은 통계적 활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자료 수집 도구에 해당하는 서식의 개선을 추진한 사례로, 누가, 어떻게 논의하고 법령 개정 등 실질적인 개선에 도달했는지 추진 방법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1. 행정안전부 추진 사례

가. (2010년) 전문가, 국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서식개선 TF’ 운영

2010년에 행정안전부(2010)는 민원서식을 국민이 작성하기 쉽고, 업무처리에도 용이하며, 세련된 디자인으로 전면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1961년 서식 설계 기준이 제정된 지 50년 만에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서식개선 작업을 위해 디자인 전문가, 일반 국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서식개선 TF’를 운영하였다. TF에서 디자인 전문가는 서식의 전반적인 개선 방향과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행정안전부 주부 모니터단의 자문위원들은 구체적인 항목들을 건의해 가며 개선 사항을 도출했다. 법제처와 국립국어원도 참여하여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했다.

‘서식개선 TF’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서’ 등 국민이 많이 쓰는 서식 40종을 우선 개선하였다. 40종의 민원서식은 소관부처가 다양하다. 행정안전부 소관 서식이 22종, 국토해양부 소관 서식이 13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법무부, 기획재정부(국세청), 외교통상부, 노동부, 경찰청 소관 서식이 각 1종으로 구성되어 있다.¹²⁾

‘서식개선 TF’의 논의로 개선된 민원서식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사무관리규정」¹³⁾과 동법의 시행규칙 그리고 각 서식을 규정한 법령의 개정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법령 개정 전 입법예고 기간에는 전국 3,826개 읍·면·동 등 민원 현장에서 국민을 상대로 의견 수렴과 홍보를 진행하였다. 특정 기간에는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로비, 서울역 대합실, 종로구청 민원실 등 세 곳에서 서식 개선 전·후를 비교하는 전시물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민원서식의 주요 개선 내용은 첫째, 국민이 이해하고 작성하기 쉽게 유사한 항목의 배열을 다시 하고, 기재 공간을 확장했으며, 민원인과 공무원 기재란을 음영표시로 구분하였다. 둘째,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시각적으로 답답하게 느껴지는 표의 옆선을 생략하고 표 내부의 상·하 구분선을 정렬했으며, 관계 법령 및 작성 안내 등의 배치 위치와 글자 정렬을 통일하였다. 셋째, 관리하기 편하고 만들기 쉽도록 표 스타일과 글꼴(모양, 크기 등)을 표준화하고, 문서 작성 시 기재하기 어렵거나 전자화 과정에서 오류발생 우려가 있는 표시방식(예. 체크박스)은 배제하였다.

12) 이후 명칭이 변경된 기관이 있으나 2010년 당시 사용한 기관명을 제시하였다.

13) 해당 법령은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다.

나. (2016년)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민원서식 개선위원회’ 운영

2016년에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¹⁴⁾(2016a, 2016b)는 민원서식 개선을 위해 대법원, 국토교통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민원서식 개선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우선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가족관계, 주민등록 및 자동차 관련 민원서식과 출입국 및 외국인고용 관련 민원서식 등 5개 분야 60종의 서식 개선을 추진하였다. 60종은 행정자치부 소관 서식이 29종으로 다수이고, 국토교통부 11종, 대법원 10종, 고용노동부 6종, 법무부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⁵⁾ 위원회에서 도출한 민원서식 개선 방안은 이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구현되었다.

2016년에 추진한 민원서식 개선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민원인이 제시한 신분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작성 항목에서 없애고 대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대표적인 사례로 ‘출생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임신주수’, ‘신생아 체중’, 부모의 ‘국적’ 등 9개의 인구동향조사 항목을 삭제함에 따라 출생신고 시 부모의 ‘최종 졸업학교’ 1개 항목만 작성하게 되었다. ‘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및 ‘사망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인구동향조사 항목도 총 22개에서 11개로 대폭 축소되었다(통계청, 2021).¹⁶⁾

통계청도 ‘민원서식 개선위원회’에 참여하였는데,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 제시한 ‘출생·혼인·이혼·사망신고서’에 포함된 인구동향조사 항목의 담당 기관이므로 「가족관계서식개선분과」의 위원으로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출생·혼인·이혼·사망신고서’에서 인구동향조사 항목을 간소화하기 위해 2016년에 「통계법」 제24종의2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신고서 첨부서류 등 인구 동향 정보가 포함된 행정자료를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다. (2019년) 민원서식 개선 대국민 공모 실시

2019년에 행정안전부(2019)는 국민의 민원 서비스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민원서식에 관한 개선 의견을 공모하였다. 우수한 제안은 향후 관련 기관·부처와 협의하여 실제 민원서식 개선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하였다.

이 공모전에서는 개선할 대상으로 국민이 자주 찾는 민원서식 100종, 민원 신청 사

14) 2016년에는 기관명이 행정자치부이었으며, 2017년에 다시 행정안전부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5) 이후 명칭이 변경된 기관이 있으나 2016년 당시 사용한 기관명을 제시하였다.

16)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사망신고서’는 각각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의 [양식 제1호], [양식 제10호], [양식 제11호], [양식 제19호]에 해당한다. 2017년 각 신고서에서 인구동향조사 항목이 축소되었고, 개정된 서식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회적 배려 대상자 관련 서식 40종, 기타 민원서식 중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할 내용으로 안내하였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공급자적 용어 대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할 사항, 신청서 작성 항목이 복잡하거나 중복해서 기재하게 되어 있어 작성 항목 간소화가 필요한 사항, 유사한 서식을 통합할 필요가 있는 사항, 민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제외 또는 간소화가 필요한 사항,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삭제가 필요한 사항 등이다. 개선 의견은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의 ‘국민제안’ 코너를 통해 제출하도록 하였다.

라. (2020년) 큰 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2020년에 행정안전부(2020)는 작은 글씨와 좁은 작성란으로 읽고 쓰기 힘들었던 오프라인 민원신청 서식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오프라인 민원창구의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생활 밀접 서식 42종(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신청서, 적성검사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등)에 대하여 ‘큰 글자 서식’을 도입하였다. 대상 서식 42종은 8개 부처 소관으로 국토교통부가 12종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 6종, 행정안전부 5종, 농림축산식품부 5종, 국가보훈처 5종, 해양수산부 4종, 경찰청 3종, 고용노동부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⁷⁾

행정안전부는 소관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¹⁸⁾을 개정하여 큰 글자 서식의 설계 기준을 마련하였다. 42종 중 행정안전부 소관 2종과 경찰청 소관 3종은 해당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큰 글자 서식으로 우선 개정하고, 나머지 37종도 각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하였다.

큰 글자 서식은 이용자가 읽고 쓰기 편하도록 개선한 서식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서식에 비하여 글자 크기를 키우고, 가독성 높은 글자체인 맑은 고딕을 적용해 한눈에 읽기 쉽게 하였다. 아울러 작성란 높이와 너비를 확대하여 충분한 작성 공간을 확보하되 민원인의 작성이 필요한 항목은 가능한 한쪽에 배치하고, 작성란이 2쪽 이상으로 늘어나면 뒤쪽에 작성란이 있음을 강조 표시하여 민원인이 빠뜨리는 경우가 없도록 하였다.

17) 이후 명칭이 변경된 기관이 있으나 2020년 당시 사용한 기관명을 제시하였다.

18) 해당 법령은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다.

2.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례

가. 조례 개정을 통한 민원서식 정비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서식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큰 글자 서식의 설계 기준에 맞게 정비한 사례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서식 개선을 논의하고 설계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여 해당 서식에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민원서식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한 민원서식을 정비한 사례는 조례 개정과 관련한 조례안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¹⁹⁾ 이러한 사례에서 민원서식이 규정된 조례의 조문은 변경하지 않고 별지의 서식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지의 서식은 주로 글자 크기, 글자체, 표 서식 디자인 등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국민생각함’을 통한 민원서식 개선 방안 의견 청취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민원서식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민생각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은 기관에서 의견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면 일정 기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국민생각함’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서식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작성한 게시물이 있다.²⁰⁾ 해당 기관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민원서식을 작성할 때 불편한 사항, 개선 방향, 개선이 필요한 민원서식 등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5가지 보기를 제시하고 의견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투표 방식으로 의견을 파악하였다. 5가지 보기는 ‘①글씨 크거나 배치가 보기 어렵습니다, ②항목을 줄여 주세요, ③쉬운 말로 바꿔 주세요, ④모바일에서도 편하게 작성하고 싶어요, ⑤기타’로 제시되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러한 과정은 민원서식을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진행되었다.

19) 서울특별시 금천구(2024), 경기도 하남시(2024; 2025),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2024) 등에서 공고한 조례 개정과 관련한 조례안에서 민원서식 개선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20) ‘국민생각함’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광주광역시 남구, 경기도 평택시에서 의견을 청취한 사례가 있다(국민생각함).

제 3 장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제1절 행정자료 입수 및 DB구축 관련 제도

1. 법적 근거

가. 통계법

「통계법」에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행정자료를 요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표 3-1>). 2007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제24조제1항).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행정자료의 제공 범위와 방법 등은 요청기관과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2014년에는 통계청장(현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등에게는 사망원인통계에 관련된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통계법」상 정보제공 공공기관의 범위에 사법기관 등을 포함함으로써 혼인·출생·사망 통계 작성에 필요한 사법기관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통계 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후 2016년에는 통계청장이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및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 등을 활용하여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제24조의2제4항 및 제5항), 사법기관이 통계청에 제공하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와 목적을 구체화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표 3-1> 「통계법」

통계법 [법률 제21065호]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가 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원인통계에 관련된 형사사법 정보의 제공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이하 “인구동태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2. 다른 법률에 따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⑤ 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2009년 「국세기본법」, 2014년 「지방세기본법」, 2017년 「관세법」에 국가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²¹⁾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세무 행정의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하나,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표 3-2>). 행정자료 가운데 국가 전체 경제 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방대한 자료인 과세정보를 통계 목적에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이 비밀유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5호,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제6호, 「관세법」 제116조제1항제4호가 신설되었다.

<표 3-2>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p>국세기본법 [법률 제21134호]</p> <p>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p> <p>5.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p>
<p>지방세기본법 [법률 제21134호]</p> <p>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p> <p>6.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p>
<p>관세법 [법률 제21134호]</p> <p>제116조(비밀유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p> <p>4.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p>

다. 개인정보보호법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제외한다는 단서가 삭제됨에 따라 승인통계 작성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행정자료를 입수 및 활용하는데 제한이 발생하였다. 통계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표 3-3>)을 근거로 「통계법」 제24조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라 「통계법」 제24조에 의해 승인통계 작성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행정자료를 입수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통계청, 2025g).

<표 3-3> 「개인정보보호법」

<p>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20897호]</p> <p>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p> <p>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p>

라. 국가데이터처 내부 규정 및 매뉴얼

법령 외에도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에 관한 국가데이터처 내부 규정과 매뉴얼이 존재한다.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정자료 관리 및 보안에 관해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통계청 개인정보 보호지침’과 같은 예규와 ‘행정자료 개별파일 보안관리 매뉴얼’이 있다.

또한 ‘행정자료 입수 업무 매뉴얼’은 입수 절차, DB구축, 개별 파일 관리, 행정자료 이용 방법 등 입수 업무 전반을 안내한다. 또한 ‘행정자료DB 이용 및 제공 가이드라인’은 행정DB 유형별 이용 기준 및 범위, 이용 및 제공 절차, 제공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2. 데이터융복합관리시스템

‘데이터융복합관리시스템’은 행정자료의 입수부터 DB구축, 그리고 활용까지 통계 데이터 생애주기(입수·융합·활용) 전 단계를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통계청에서 구축하여 접속 권한이 있는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09년 구축된 ‘행정자료관리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라 2021~2023년 개발 과정을 거쳐 기존 ‘행정자료DB 통계등록부 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직무를 이관한 것이다.

가. ‘데이터융복합관리시스템’ 구성(<그림 3-1>)



<그림 3-1> 데이터융복합관리시스템 구성도

‘데이터융복합관리시스템’은 여러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융복합관리포털’은 행정자료 수요 신청 등의 각종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DB 레이아웃 및 각종 시스템 이용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입수관리시스템’은 입수자료에 대한 수요 및 계획관리, 자료 정보관리, 입수자료의 품질 점검, 자료 적재·구축 기능을 지원한다. ‘표준관리시스템’은 입수자료의 표준화, 메타데이터 작성 및 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등 데이터 전처리를 지원한다. ‘통계DB구축시스템’은 경제DB, 등록센서스DB, 농림어업DB, 통계등록부 등을 구축 관리한다. 이 밖에 ‘보존관리시스템’은 입수, 정제, 구축 등 업무 단계별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식별화관리시스템’은 식별 항목에 대한 점검 및 비식별화 처리 기능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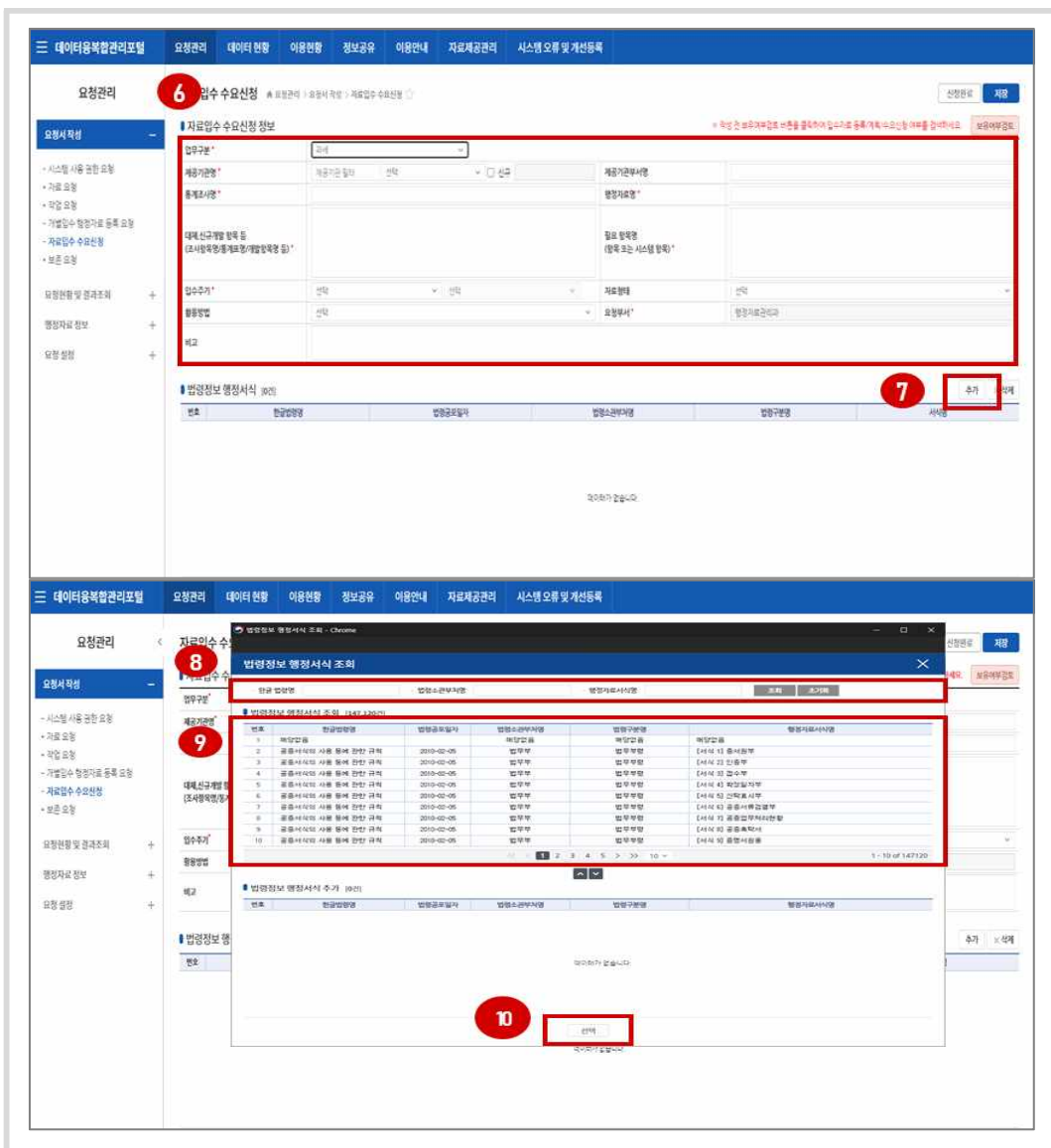
행정자료 분석 시 ‘분석관리시스템’은 간단한 온라인 조회 및 분석, ‘원격분석시스템’은 로컬 PC에서 원격분석서버(Ctrix, VMWare)에 접속해 SAS, R 등의 툴을 사용하여 직접 자료를 분석할 때 이용한다(통계청, 2025f).

나. ‘데이터융복합관리포털’에서 자료입수 신청 시 해당 행정서식 검색 및 입력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가데이터처 구성원은 ‘데이터융복합관리시스템’ 내 ‘데이터융복합관리포털’에서 필요한 행정자료 입수에 대한 수요를 신청할 수 있다. 자료입수 수요를 신청할 때 신청자료에 대한 기본정보²²⁾(<그림 3-2> ㉔)와 함께 신청자료

의 정보를 수집한 도구인 행정서식을 입력해야 한다.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그림 3-2> ⑦), ‘법령정보 행정서식 조회’ 창이 제시된다. 이 창에서 원하는 법령정보를 조회하고(<그림 3-2> ⑧), 조회 결과 중 해당 서식을 더블클릭하면 법령정보 행정서식이 추가된다(<그림 3-2> ⑨) 서식은 필수 입력 사항으로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을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그림 3-2> ⑩)(통계청, 2025e).



<그림 3-2> '데이터융복합관리포털'의 법령정보 행정서식 입력과정

- 22) 필수 입력 사항은 업무 구분, 제공기관명, 통계조사명, 행정자료명, 대체·신규개발 항목 등(조사항목명/통계표명/개발항목명 등), 필요 항목명(항목 또는 시스템 항목), 입수주기, 요청부서이다

제2절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

1. 개요²³⁾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는 통계작성기관이 통계 작성(변경) 승인·협의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를 우선 판단하거나 국가데이터처에게 판단을 의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통계 작성 시 행정자료를 우선 활용하여 통계 응답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통계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생산·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의 공유를 확대하여 행정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하였다.

제도 시행 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 작성(변경) 승인이나 협의 전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자체판단’ 또는 ‘판단의뢰’를 해야 한다(「통계법」 제18조제2항). 이밖에 판단 시점이 다른 경우도 있다. 지정통계 작성을 위해 관계 자료가 필요하거나(「통계법」 제25조제1항),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통계법」 제26조제1항)도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지정통계 작성을 위해 관계 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자체판단’만 가능하다.

‘자체판단’은 통계작성기관에서 직접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행정자료 유무 확인 혹은 판단이 곤란하면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와 사전협의할 수 있다. 통계작성기관은 자체판단이 완료되면 판단 결과를 첨부하여 통계 작성(변경) 승인을 신청한다. 통계조정 담당 부서에서 접수 및 요건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계작성기관에 통보한다.

‘판단의뢰’는 통계작성기관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에 의뢰한다.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는 판단 결과를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조정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통계작성기관에서는 결과 확인 후 통계 작성(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통계조정 담당부서의 승인 여부 결정을 통보받는다.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 판단은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작성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행정자료가 있는지(대체 가능성), 행정자료가 DB화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수집 가능한지(수집 가능성), 작성 대상과 항목 등의 용어 정의 및 개념이 서로 일치하는지(용어 정의 및 개념), 활용하고자 하는 행정자료가 통계작성 항목의 범위를 포괄하는지(포괄 범위), 행정자료의 생산주기에 따라 통계 작성이 가능한지(시의성), 통계 작성 대상을 행정자료와 연계할 수 있는가(연계 가능성)를 고려해야 한다.

23)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 매뉴얼’(통계청, 2025b)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2. 행정자료우선활용시스템²⁴⁾

‘행정자료우선활용시스템’은 통계승인에 필요한 행정자료 우선활용 판단 절차를 온라인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통계정책관리시스템’²⁵⁾의 ‘통계승인’ 메뉴의 하위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가. ‘행정자료우선활용 판단’ 메뉴 작성 중 항목별 행정서식 검색 기능

‘행정자료우선활용시스템’에서 ‘행정자료우선활용 판단’ 메뉴를 작성해야 한다. 우선 판단하려는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판단방법을 ‘자체판단’과 ‘판단의뢰’ 중 선택한다. 또한 조사기획서, 조사표 등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한다. ‘판단의뢰’의 경우 이 상태에서 제출하면 되고, 이후 판단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자체판단’의 경우 <그림 3-3>의 ‘항목작성’ 버튼을 클릭할 때 제시된 창에 행정자료 우선활용을 판단할 조사표의 문항을 모두 입력한다. 항목별로 행정자료 활용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²⁶⁾하고 관련된 행정자료명과 서식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때 조사항목명 입력 후 [F3]키를 누르면 별도의 창에서 해당 항목이 포함된 전체 서식이 제시된다(<그림 3-4>). 아울러 각 서식에 해당하는 법령과 소관부처, 세부 보유기관(담당자), DB구축 여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조사항목과 연계된 행정서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자료 활용 가능 여부 판단 시 서식에 대한 이해와 작성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보인다.

-
- 24) ‘자체판단’과 ‘판단의뢰’에 관한 각각의 ‘행정자료우선활용시스템 이용자 매뉴얼(통계작성기관용)’(통계청, 2025c; 2025d)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 25)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은 통계 승인뿐만 아니라 품질관리, 통계 기반 정책평가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 26) 활용 가능 여부는 총 19개로 분류되며 항목별로 드롭다운 리스트 방식으로 제시된 분류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하면 된다. 가장 큰 분류는 ‘활용가능’과 ‘활용불가능’이다. ‘활용가능’은 다시 ‘활용중’과 ‘활용가능’으로 나뉘고, 각각 ‘항목대체’, ‘검증보완’, ‘명부활용’, ‘기타’로 구분된다. ‘활용불가능’은 다시 ‘행정자료 없음’과 ‘행정자료 있음’으로 구분되고, ‘행정자료 없음’은 ‘경협/의식조사’, ‘행정자료 범위의’, ‘기타’로 분류된다. ‘행정자료 있음’은 ‘연계키 없음’, ‘항목대체 불가’, ‘비효율(다수의 행정자료 활용)’, ‘생산주기(시점) 불일치’, ‘용어정의/개념/포함범위 불일치’, ‘DB 미구축’, ‘지속적 수집 불가능’, ‘기타’로 분류된다.

나. ‘법령서식항목 검색’ 메뉴의 행정서식 검색

‘행정자료우선활용시스템’ 중 ‘행정자료우선활용 판단’ 메뉴와 별도로 행정서식을 검색할 수 있는 ‘법령서식항목 검색’ 메뉴도 존재한다(<그림 3-5>). ‘법령서식항목 검색’ 메뉴의 화면은 앞서 살펴본 ‘행정자료우선활용 판단’ 작성 중 확인할 수 있는 서식 검색 기능 이용 시 제시되는 화면 구성과 동일하다. 항목명으로 검색하면 해당 항목이 포함된 전체 서식과 각 서식에 해당하는 법령과 소관부처, 세부 보유기관(담당자), DB 구축 여부에 대한 정보가 제공한다.

통계승인

- 통계승인 개요
- 작성기관 및 통계
- 통계변경, 중지, 취소
- 국가통계관리
- 행정자료우선활용 판단
- 행정자료우선활용 판단
- 자체 판단 활용 결과 검색
- 법령서식 항목 검색
- 우선활용 여부 유형별 현황
- 판단 현황 데이터셋
- 통계실명자료관리시스템
- 통계예산 사인검토

법령서식 항목 검색

▶ 통계승인 > 행정자료우선활용 관리 > 입의 > 법령서식 항목 검색

> 항목명

> 법령명

> 소관부처

> 서식명

검색

※ 아래 검색결과에서 해당 말을 더블클릭하시면 서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OR 검색 : 검색어들 ' | ' 로 구분한다. ex) 이름|나이

※ AND 검색 : 검색어들 ' & ' 로 구분한다. ex) 이름 나이

※ NOT 검색 : 검색어 앞에 ' ! ' 를 붙인다. ex) !이름

총 180 건 [1 / 9 페이지]

번호	항목명	서식명	DB구축	항목정보	항목레벨
1	세대주 여부(세대주1, 세대)	[서식 24] 근로소득 환원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N	근로소득 환원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	2
2	세대주 여부(세대주1, 세대)	[서식 24] 근로소득 환원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N	근로소득 환원징수영수증(매월본)(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필	2
3	세대주 여부(세대주, 세대)	[서식 37]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	N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년 종고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세대주	2
4	세대주 여부	[서식 37]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	N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소득	2
5	소유자 (세대주의의 관계)	[서식 91] 우주학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의신청서	Y	우주학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의신청서 > 신청내용 > 소	3
6	세대주 포함세대일부가족(서식 18) 제외국민(중국, 홍콩포기신고서)		X	제외국민(중국, 홍콩포기신고서) > 구분[세대모두중국(포기),세대주	3
7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의 권	[서식 1] 외국인등 세대별 주민등록표(가령, 변경, 삭제)신청	N	외국인등 세대별 주민등록표(가령, 변경, 삭제)신청서 > 가	4
8	세대주, 성명	[서식 18] 제외국민(중국, 홍콩포기신고서)	X	제외국민(중국, 홍콩포기신고서) > 구분[세대모두중국(포기),세대주	3
9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서식 18] 제외국민(중국, 홍콩포기신고서)	X	제외국민(중국, 홍콩포기신고서) > 구분[세대모두중국(포기),세대주	3
10	세대주 포함세대일부가족(서식 18) 제외국민(중국, 홍콩포기신고서)		X	제외국민(중국, 홍콩포기신고서) > 구분[세대모두중국(포기),세대주	3
11	세대주 변경 사실(세대원외)	[서식 1]의1(전입신고,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 변경, 주민등	N	(전입신고,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	3
12	세대주의 성명(세대주의)	[서식 7]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N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 신청내용 > 초본교부	4
13	세대주의 성명(세대주의)	[서식 7]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	N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 > 위임 내용(신청	4
14	구분(세대 모두 이동, 세대)	[서식 15]의2(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	N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 전	3
15	구분(세대 모두 이동, 세대)	[서식 15]의4(국외이주신고서)	N	국외이주신고서 > 현재 사는 곳(주민등록지, 거주할예정지) > 구분	3
16	구분(세대모두중국(포기),제)	[서식 18] 제외국민(중국, 홍콩포기신고서)	X	제외국민(중국, 홍콩포기신고서) > 구분[세대모두중국(포기),세대주	2
17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서식 7]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N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 신청내용 > 초본교부	4
18	신고내용[행정(성명, 주민(서식 외) (행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권자		N	(행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권자용) > 신	3
19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서식 7]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	N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 > 위임 내용(신청	4
20	신고내용[행정(성명, 주민(서식 외)의2) (행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제외국민용)		N	(행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서(제외국민용) > 신고사항 > 신고	3

<그림 3-5> ‘법령서식항목 검색’ 메뉴의 행정서식 검색

제3절 제도적 기반에 따른 행정서식 활용현황

국가데이터처는 2024년 기준 주자료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118개 기관으로부터 319종의 행정자료를 입수하여 국가데이터처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행정자료 담당부서에서 입수하는 행정자료는 과세자료, 4대 보험자료 등이다.

<표 3-4> 연도별 행정자료 입수 현황(누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주자료	239	258	284	309	319
부속자료	534	576	619	674	690

자료: 2024년 행정자료 입수 및 DB구축 현황, 통계청, 2025a.

이 절에서는 행정자료 담당부서의 행정자료DB를 통한 행정서식 및 활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가데이터처에서 입수하여 활용하고 있는 행정자료는 총 319종이지만, 여기에서는 통계DB 구축 등 범용적으로 활용성이 높은 행정자료 89종에서 126종²⁷⁾의 행정서식에 국한하여 작성되는 행정자료의 활용 현황을 과세자료, 사회보험 및 연금자료, 농림어업, 경제 및 사회 분야 부문별로 살펴보려고 한다.

1. 과세자료 부문

과세자료 부문은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법인세, 수입배당 금액 명세서, 사업장 현황 신고서, 종합소득세, 온라인 거래자료, 사업장 현황 명세서, 공익법인 공시, 주민세, 재산세로 분류되며, 주로 국세청의 행정서식을 통해 확보된 행정자료를 입수하고 있다.

SBR(통계기업등록부) 및 취업활동통계등록부 구축, 가계부문 표본추출틀과 행정통계 및 조사통계 등의 대체나 검증 및 보완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7) 여기에서 89종의 주자료 기준 126개의 행정서식이 있으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주자료 작성을 위한 행정서식에는 중복이 있다.

2. 사회보험 및 연금 부문

사회보험 및 연금자료 부문은 건강보험, 건강보험 육아휴직자, 국민연금, 고용보험, 고용보험 육아휴직자, 산재보험, 산재보험 근로자, 노무제공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으로 분류되며, 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험 및 연금 관련 기관의 행정서식을 통해 확보된 행정자료를 입수하고 있다.

SBR(통계기업등록부) 및 취업활동, 아동, 청년의 통계등록부 구축, 가계부문 표본추출틀과 행정통계 및 조사통계 등의 대체나 검증 및 보완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3. 농림어업 부문

농림어업 부문은 농지대장, 축산업등록명부, 입목 벌채허가 및 신고대장, 국유림 허가신청서 등으로 분류되며, 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에서 행정서식을 통해 확보한 행정자료를 입수하고 있다.

농림어업가구통합DB 및 축산물생산비조사 표본추출틀과 농림어업 부문의 행정통계 및 조사통계 등의 대체나 검증 및 보완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4. 경제·사회 부문

경제 및 사회 부문은 장애인등록명부, 공장등록대장, 주민등록 등으로 분류되며, 주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의 행정서식을 통해 확보된 행정자료를 입수하고 있다.

취업활동통계등록부 및 아동가구통계등록부 구축 자료와 행정통계 및 조사통계 등의 대체나 검증 및 보완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서 활용하는 행정자료의 서식은 법령(상위규정)의 개정이나, 정책적 목적의 변화 및 행정업무 프로세스 개편, 기관 간 자료 통합, 표준화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정이 된다. 이러한 행정서식의 개정은 이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데이터의 추가, 삭제 등의 변화에 따라 기존 자료와의 연계 등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국가데이터처에서는 2023년부터 행정자료의 근간이 되는 행정서식에 대한 항목, 분

류 등에 영향이 있는 변경사항에 대해 통계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항목 변경내역이 있으면 입수할 때 반영하고 이를 활용하는 담당자에게 공유하고 있다.

2023년 이후 처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서식은 행정자료 담당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행정서식이 변경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 국민연금법 등의 시행규칙이 용어, 제도 확대, 법령 변경의 사유로 인해 변경되었다.

제 4 장

요약 및 개선 방향

제1절 요약

본 연구는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성 제고 측면에서 행정자료의 정보를 수집하는 도구에 해당하는 행정서식의 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추진해야 할지 방향성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에서는 먼저 행정서식 개선을 통해 서식의 통계적 활용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공익법인이 매년 의무적으로 재정과 사업 현황 등의 정보를 공시하는 서식을 개선하여 비영리 분야의 정보축적과 통계를 생산하는 방안을 연구한 사례가 있다(박주언과 이희길, 2013b). 통계개발원에서는 3년간의 단계적인 연구를 통해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서식 개선안을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범정부 ‘나눔활성화 정책협의회’를 통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서식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범정부 협의회의 조율로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서식의 소관기관인 국세청에서 서식을 개정하였으며, 서식을 규정한 기획재정부 소관의 법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서식 개정은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통계생산을 위해 공시가 필요한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항목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통계개발원에서 행정서식 개선으로 서식에서 수집한 자료의 통계적 활용성 향상을 시도한 연구가 있다. 출생통계 작성을 위해 ‘출생증명서’를 개선하거나(박은영과 민경아, 2014), 한국중사상지위분류의 개정을 반영하여 행정자료를 통해 임금근로자의 분류를 세분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서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한 연구가 있다(박성률과 변준석, 2022). 이 연구들은 기존 서식에 필요한 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항목을 재구성하는 방식 등을 도출하였다. 다만 이러한 개선 방안은 이후 서식의 소관기관과 논의하여 실질적인 서식 개정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앞서 살펴본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서식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논의하여 서식 소관기관이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와 차이가 있다.

한편, 민원 서식 설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례도 살펴보았다. 이 사례는 통계

적 활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자료의 자료 수집 도구에 해당하는 서식 개선을 추진한 사례로, 누가, 어떻게 논의하고 법령 개정 등 실질적인 개선에 도달했는지 추진 방법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민원서식은 민원 신청에 사용하는 문서로, 국민과 정부 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이지만, 서식이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고 작성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서식개선 TF’, ‘민원서식 개선위원회’ 등 서식 개선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다. 협의회에는 다른 정부기관과 관련 전문가 등도 참여하여 행정안전부와 참여한 다른 정부기관 소관 서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서식의 작성 항목 최소화, 작성 편의성 제고, 디자인 개념 도입 등 서식 설계의 기준 변경을 논의하였고, 필요한 법령과 서식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개선에 도달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서식설계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여 서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3장에서는 국가데이터처의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과 관련되어 행정서식 관련 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제도 전반을 파악하고 전체 맥락에서 행정서식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먼저 행정자료 입수와 DB 구축은 「통계법」 등 여러 법령과 처 내부의 규정 및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데이터융복합관리시스템’으로 행정자료 수요부터 입수, 융합 및 통계 활용까지 통합 운영된다. 이 시스템 중 ‘데이터융복합관리포털’은 행정자료 수요자가 자료입수를 신청할 때 신청자료의 정보 수집 도구에 해당하는 행정서식을 포털에서 바로 검색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

통계승인 관련해서는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가 있다. 통계승인 전에 통계작성기관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 작성이 가능한지 우선 판단해서 행정자료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행정자료우선활용시스템’을 이용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항목을 작성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시스템에 관련 행정서식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때 조사항목과 관련된 행정서식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시스템에서 제공함으로써 행정자료 활용 가능 여부 판단 시 서식에 대한 이해와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서식과 통계적 활용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통계적 활용성이 주안점이므로 국가데이터처 주요 행정자료의 정보 수집 도구에 해당하는 행정서식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국가데이터처의 주요 행정자료는 행정자료 담당부서에서 직접 입수해서 관리하고 통계DB 구축 등 범용성이 높아 검토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데이터처의 행정자료 담당부서에서는 2024년에 주자료 기준으로 89종²⁸⁾의 행정자료를 직접 입수·관리하고 있고, 89종에 관련된 행정서식은 126개²⁹⁾인 것으로 나타났다.

28) 「2024년 행정자료 입수 및 DB구축 현황」(통계청, 2025a)에 수록된 주자료를 집계하였다.

검토대상 행정자료를 과세자료, 사회보험 및 연금자료, 농림어업, 경제 및 사회 분야로 나누고, 분야별로 행정자료에 연계된 행정서식의 현황을 제시하였다. 행정자료의 기반이 되는 행정서식에 규정된 법령과 소관기관 정보를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행정자료별로 행정서식에서 도출한 정보를 통해 국가데이터처에서 어느 통계 생산에 활용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2절 개선 방향

행정서식은 행정자료 및 국가통계 생산의 기초단위로 기능한다. 특히 하나의 행정서식이 여러 통계에 동시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서식은 전체 통계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선행 연구 및 현황들의 검토를 통해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시 검토해 볼 사항을 단기 및 중장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단기 개선 방향

단기적 개선 방향에서는 행정서식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바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노후화된 행정서식의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 행정자료DB의 126종 행정서식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 시점과 활용 빈도를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향후 소관기관과 협의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일부 서식은 개정 이후 상당 기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도 있었다.³⁰⁾

둘째, 활용부서의 서식 개선에 대해 ‘데이터융복합관리포털’을 통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현재 매년 활용부서와의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여 반영하고 있다. 데이터융복합관리포털을 통해서도 자료입수 신청 시 서식에 대한 항목 추가, 변경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행정서식 개정을 위

29) 다만 사회보험 및 연금자료를 중심으로 동일한 행정서식이 여러 행정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중복을 제외한 행정서식은 111개로 나타났다.

30) 126개의 행정서식 중 중복을 제외한 111개를 대상으로 현재 시점(2025.12월)에서 최근 개정이 시점 상 5년 이상인 서식을 정리하였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행정서식 중에도 단순한 기관명칭 변경 등으로 최근 개정이 이루어져 제외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 시범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사용 가능하다.

2. 중장기 개선 방향

중장기적 개선 방향은 단기 개선 방향에서 제시된 사항을 시범 사업화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며, 행정서식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단계이다.

중기적으로는 서식개선 협의를 위한 실무중심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서식의 소관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법령 개정과 연계되어 협의 부담이 큰 만큼 소규모 실무중심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협의체에서는 서식 활용성에 대해 적극 공유함으로써, 서식개선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장기적으로는 실무중심협의체에서 범부처 행정서식검토협의회로 확장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소관기관, 국가데이터처, 국무총리실(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서식 개선 논의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협의체는 서식 개정 요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계적 영향, 행정적 비용, 법령 개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 외에도 소관기관에서 관리하는 오래된 서식에 대해 개정 수요를 파악하고 활용 부서 간 행정서식 개선 연구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소관부관에서는 행정서식의 서식구성과 관련하여 항목의 이해도와 디자인 등 작성자의 편의성 측면을 고려하고, 활용부서 입장에서는 통계적 활용도를 고려한 행정서식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서식개선 TF 통해 서식구성은 조사표실험실 중심으로, 내용 측면은 주제별 연구자 및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도출한다.

참고문헌

- 국무총리실. (2012). 나눔 활성화 정책협의회 운영 계획(내부자료).
- 경기도 하남시. (2024).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 경기도 하남시. (2025).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2024).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박성률, 변준석. (2022). 한국중사상지위분류 개정에 따른 경제구조통계 적용 방안 연구. 통계개발원(현 국가데이터연구원) (내부자료).
- 박은영, 민경아. (2014). “다양한 출생통계 작성을 위한 출생증명서 활용방안”. 통계개발원.
- 박주언, 이희길. (2012). “나눔통계 개선방안”. 통계개발원.
- 박주언, 이희길. (2013a). “NPO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한 통계 작성방안”. 통계개발원.
- 박주언, 이희길. (2013b). 공익법인 정보공개양식의 통계활용 제고방안. 통계개발원(내부자료).
-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2021년 1월 15일). 「이혼·사망신고 때 최종학력은 왜 요구하나」 보도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 '21.1.15.(금) 한겨레, 경향신문 등 - [보도자료].
- 통계청. (2025a). 2024년 행정자료 입수 및 DB구축 현황(내부자료).
- 통계청. (2025b).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 매뉴얼.
- 통계청. (2025c). 행정자료우선활용시스템 이용자 매뉴얼. (통계작성기관용)-자체판단 편-.
- 통계청. (2025d). 행정자료우선활용시스템 이용자 매뉴얼. (통계작성기관용)-판단의뢰 편-.
- 통계청. (2025e). 행정자료 입수 직무편람(내부자료).
- 통계청. (2025f). 데이터 융복합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유지관리 직무편람(내부자료).
- 통계청. (2025g). 입수·DB구축·이용·관리 행정자료 업무 담당자 및 이용자 교육(내부자료).
- 행정안전부. (2010년 5월 26일). 민원신청서식, 깔끔하고 쓰기 쉽게 바뀐다 - 디자인 개념 도입, 민원량의 60%에 육박하는 서식 40종 우선 개선 -[보도자료].
- 행정자치부. (2016년 5월 2일). 민원서식, 쓰기 쉽고 간단하게 바뀐다- 행자부, 민·관 합동 「민원서식 개선 위원회」 운영 -[보도자료].
- 행정자치부. (2016년 9월 6일). 민원서비스 신청하기 훨씬 쉬워진다 - 가족관계·주민등록 등 5개 분야 60종 민원서식 간소화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2019). 민원서식 개선 대국민 공모 안내문.
https://blog.naver.com/korea_gov/221534248070
- 행정안전부. (2020년 9월 10일). 민원신청서, 글씨는 키우고, 불편은 줄이고! - ‘큰글자 서식’ 도입·확산 위한 「행정효율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민생각함 <https://www.epeople.go.kr/nep/thk/subj/SubjThinkList.npaid>

Abstract**A Research on Directions for Improving Administrative Forms to Enhance the Use of Administrative Data****SangMin Nam , Jueon Park**

This study aimed to enhance the statistical usability of administrative data by exploring methods to improve administrative forms, which are used when obtaining information from administrative data. Administrative forms are a fundamental unit for administrative datasets and the production of national statistics. As a single administrative form can be widely utilized in producing multiple sets of statistics, its structure and quality directly affect statistical accuracy and the efficiency of statistical business processes. However, administrative forms are typically designed according to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of individual agencies, which makes systematic improvements in the short term difficult from a statistical usability perspective.

A review of prior research results and case studies indicates that when a government-wide consultation body and coordination structure were established, administrative forms - for instance the information disclosure forms of non-profit organizations - were actually revised. In contrast, in cases where improvement plans were driven solely by statistical necessity, progress was halted in the middle of the inter-agency consultation stage. These experiences imply that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improvements in administrative forms requires an institutionalized consultative framework that integrates both statistical and administrative objectives and facilitates effective coordination.

The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comprehensively manages administrative data through the Data Convergence Management Portal, covering the entire process from identifying data demand to supporting data utilization. In this process, administrative forms play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data acquisition and utiliz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at in the short term outdated administrative forms should be singled out for improvement, and opinions on improvement should be collected from the agencies that use administrative data starting from the stage of utilizing administrative data. In the medium to long term, a practical government-wide consultative body for the improvement in administrative forms should be established to institutionally enhance administrative forms. Ultimately, it is expected that this step-by-step approach will create a virtuous cycle, which leads to the improvements in administrative forms to strengthen the quality of administrative data and the reliability of national statistics.

Key words: administrative data, administrative form

● 연구진

- 남상민(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통계방법연구실 사무관)
 - 박주연(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통계방법연구실 주무관)
- * 연구진의 소속 및 직급은 연구과제 완료 시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구보고서 2025-21

행정자료의 활용 제고를 위한 행정서식 개선 방향 검토

인 쇄	2026년 3월
발 행	2026년 3월
발 행 인	김 진
발 행 처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mods.go.kr/dsri/
ISSN(Online)	2733-4120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

